



2025년

#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Stewardship Code Compliance Report

---

신영자산운용

2026.04



**01** | 기관 소개 & 코드 도입 및 원칙 채택 현황

**02** | 수탁자 책임 정책 및 조직 체계

**03** | 이해상충 관리 정책 및 내역

**04** | 수탁자책임 이행지침

**05** | 주주 관여 활동

**06** | 기업가치제고 관여 활동

**07** | 의결권 행사 정책 및 내역

**08** | 활동 보고서 공개 정책



## 회사 개요

<b>회사명</b>	신영자산운용(주)
<b>설립일자</b>	1996년 8월 1일
<b>대표이사</b>	엄준흠
<b>자본금</b>	320억 원
<b>임직원 수</b>	58명(사외이사 3명 및 고문 2명 포함)
<b>운용자산 규모</b>	10조 736억원(순자산,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b>회사 주소</b>	(073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b>대표 번호</b>	02-6711-7500
<b>홈페이지</b>	www.syfund.co.kr

※ 2026년 3월 31일 기준

## 소유구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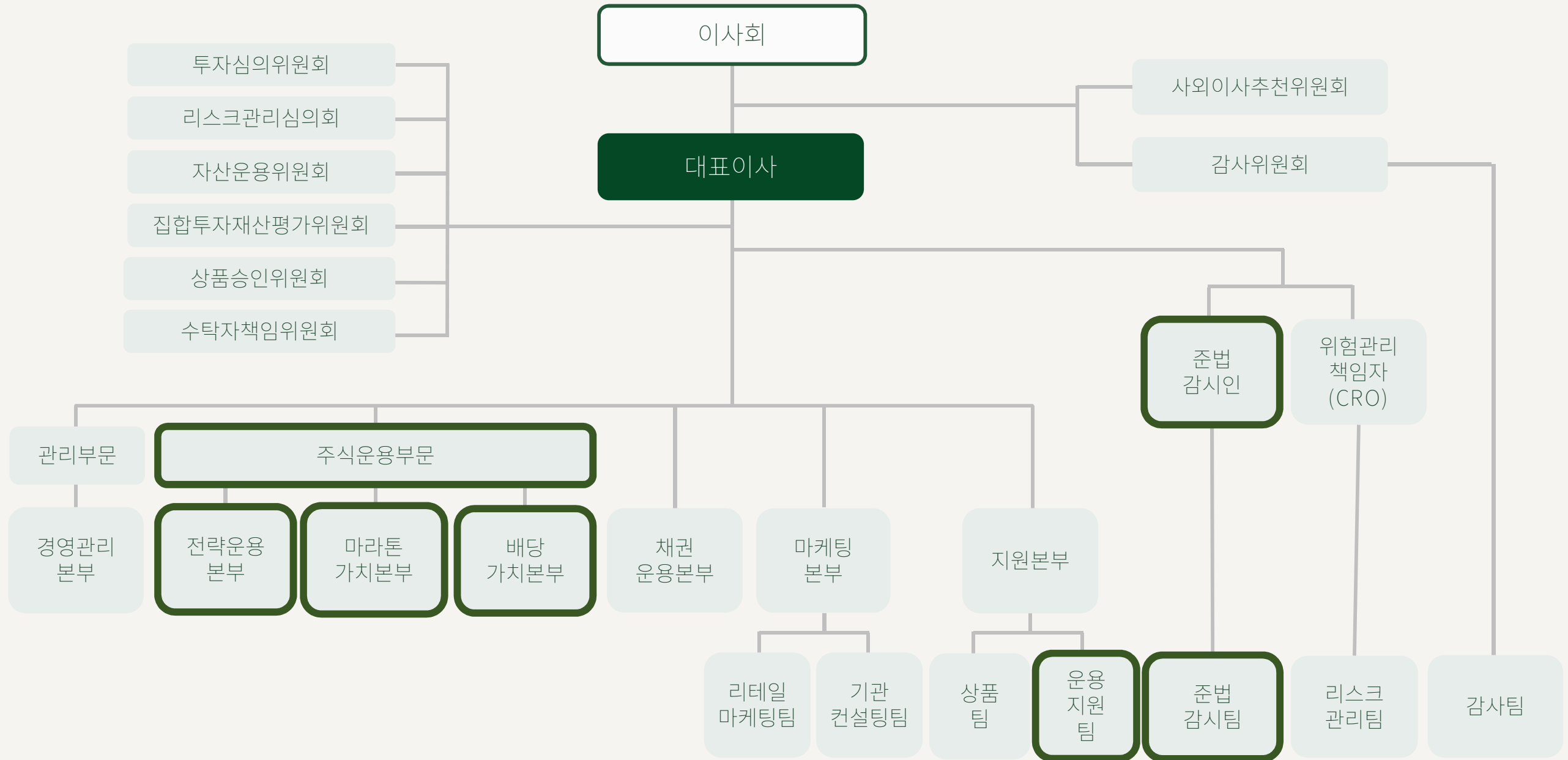
주주명	신영증권	코리안리 재보험	서울 보증보험
지분율	85.9%	9.4%	4.7%

AUM 현황 ※ 2026년 3월 31일 기준, NAV 기준, 금융투자협회 공시 기준, 단위: 억 원

증권	주식	41,940
	혼합주식	2,363
	혼합채권	10,150
	채권	1,036
	재간접	1,970
단기금융		42,451
혼합자산		826
합계		100,736



## 조직도



※ 2026년 3월 31일 기준이며, 테두리가 강조된 부서(주식운용부문(전략운용본부, 마라톤가치본부, 배당가치본부), 준법감시팀, 운영지원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주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개요

항목	내용
코드명	신영자산운용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일자	2024년 07월 15일
공시 URL	<a href="http://www.syfund.co.kr/policy/stewardship-code">www.syfund.co.kr/policy/stewardship-code</a>

### 스튜어드십코드란?

기관투자자(자산운용사, 연기금 등)가 투자대상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와 수익자 이익을 위해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결권을 책임 있게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 규범입니다.

한국판 스튜어드십코드(2016년 도입)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장기 투자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 스튜어드십코드 담당자

담당	성명	직위	직책	소속	이메일	연락처
책임자	노신윤	상무	본부장	전략운용본부	<a href="mailto:shinyoon@syfund.co.kr">shinyoon@syfund.co.kr</a>	02-6711-7562
담당자	황명찬	팀장	수석운영역	전략운용본부	<a href="mailto:myeongchan.hwang@syfund.co.kr">myeongchan.hwang@syfund.co.kr</a>	02-6711-7555
담당자(내부통제)	송주희	준법감시인	부장	준법감시팀	<a href="mailto:jhsong@syfund.co.kr">jhsong@syfund.co.kr</a>	02-6711-7556



## 수탁자책임위원회 — 수탁자 책임 이행 정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

구분	세부 내용
명칭	수탁자책임위원회 (이하 "위원회")
설치 근거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이하 "지침") 제5조 (2025.08.01. 개정)
설치 목적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사안의 심의·의결
위원장	대표이사
간사	전략운용본부 담당자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 구성	대표이사, 주식운용본부장, 전략운용본부장, 해당 종목 분석 담당자, 전략운용본부 담당자, 준법감시인 ※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추가 가능
소집권자	전략운용본부장
주관부서	전략운용본부
심의·의결 사항	① 중점 관여 기업 지정 및 해제, 활동 계획 결정 ② 수탁자 책임 활동 내용 및 결과의 공개 여부 결정 ③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 제13조 제2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관련 의사 결정 ④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의결 방법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위원 겸직 시 해당 의결권 수는 1인 간주 /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대표이사)에게 결정권 부여
주요 보고 사항	활동계획 종료 후 전략운용본부가 수탁자 책임 활동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위원회는 보고를 기반으로 중점 관여 기업에 대한 활동 종료 또는 연장 결정
공개 의무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지침 제7조)



## 스튜어드십코드 원칙 채택 현황

1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의 제정 및 공개	✓ 채택
2	이해상충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의 제정·공개	✓ 채택
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 실시	✓ 채택
4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 및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 채택
5	의결권 행사 정책 제정·공개 및 의결권 행사내용·사유 공개	✓ 채택
6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활동의 주기적 보고	✓ 채택
7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 채택

7개 원칙  
쑤원칙  
채택



## 기본 원칙 및 주요 요소

**신영자산운용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한국판 스투어드십 코드)를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당사는 1996년 설립 이래 가치투자·장기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심층 분석하여 고객 자산의 장기적 성과 제고에 힘써 왔습니다. 기관투자자로서 기업과의 대화, 의결권 행사, 투명한 공시 등 책임 있는 주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거버넌스 개선과 단기성과 편향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조직 체계

조직	유형	인원	주요 역할	전문성
전략운용본부	겸임	5명	주주관여활동 수행 수탁자책임활동 평가·보고	업계 평균 경력 4.6년
운용지원팀	겸임	2명	의결권 행사 실무 지원 행사 내역 공시·보고	-
준법감시팀	겸임	2명	내부통제·이해상충 관리 법률적 쟁점 사안 검토	업계 평균 경력 7년

## 전문성 확보 노력

### 교육·연수

ESG·지배구조 관련 세미나,  
금투협 의결권 행사 교육 등

### 외부 자문기관

독립적 제3자 의결권 자문 전문 기관 참고





## 이해상충 관리 정책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해상충 관리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이해상충 유형

유형	설명	관리 방안
회사-고객	회사 이익과 고객 이익의 상충 가능성	독립적 의사결정, 준법감시팀 사전 검토
직원-고객	임직원 개인이익과 고객 이익의 상충	임직원 개인매매 제한, 이해상충 신고
계열사 관련	계열사 관련 의결권 행사 시 이해상충 발생	계열사 관련 안건 독립적 심의, 수탁자책임위원회 의결

#### ① 이해상충 관리

지침 제8조 제1항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평가
- 가능성 인정 시 준법감시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투자자 보호 수준으로 완화 후 처리
-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객·투자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매매 제한 가능
- 완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계약 및 거래를 제한하거나 거절 가능

#### ②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지침 제8조 제2항

- 경영진 면담·서면 질의 등 활동 중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엄격히 금지
- 미공개정보 취득 시, 대상 회사가 공정공시 등으로 공개한 이후 매매 가능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78조의2 등)
- 임직원은 관련 법령·내규 및 준법감시인이 마련한 절차 준수

#### ③ 준법감시부서의 역할

지침 제8조 제3항

- 수탁자 책임 활동 시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 점검
- 위반행위 발생 시 해당 임직원 제재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 필요 조치 실행
- 법률 쟁점(주주제안 요건, 5% 룰, 미공개정보 취득 여부 등) 발생 시 사전 검토 필수

### 이해상충 관리 내역 — 보고기간: 2025년 1월 ~ 12월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팀에서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의 사전 교육을 시행하고, 의결권 행사 시 내부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행사 대상 전체 종목 안건 검토를 시행하여 실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추후 해당 사항 발생 시 구체적인 관리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을 마련하여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 및 주기적 점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

### 1차 관여 (비공개·우호적)

기업 미팅 및 경영진 인터뷰를 통한 개선 사항 제언, 비공개 서신 발송, 반대 의결권 행사

### 2차 관여 (공개·적극적)

주주서한 공개 발송, 주주제안, 필요시 소송 등 단계적 확대

### 대화 주제

주주환원 정책, 지배구조 개선, 기업가치제고 계획, 자본 배분, ESG 관련 이슈 등

## 투자대상회사 주기적 점검

### 점검 주기

주주총회 시즌(3~4월) 집중 점검 및 연중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점검 기준

지배구조 건전성, 주주가치 환원 수준, 경영 투명성, 공정공시 준수 여부, 이사회 구성·활동의 적정성 등

### 점검 후 조치

중점 관여 기업 리스트 관리 시 점검 결과 반영, 주주관여활동 실시 여부 결정 및 의결권 행사 시 참고



## 1단계 — 비공개·우호적 관여 (순차 이행 원칙) | 지침 제4조 제1항 제1호 (2025.8~)

### 1 사적 대화

활동 개시 첫 접촉

- 주주관여 활동 개시를 대상 기업에 공식 통보하는 첫 접촉 단계
- 주주 지위와 관여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며 향후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관

전략운용본부 (IR 담당자 확인 및 연락)

#### 내용

중점관여 대상 기업 지정 사실 통보, 핵심 관심 의제 (주주환원 정책 등) 예고, 면담 요청 의사 전달

#### 형태

IR 또는 담당 부서 미팅

### 2

### 경영진과의 대화

지침 제4조 제1항 제1호

- 대상 기업 경영진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당사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협의
- 경영진의 현황 인식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참석자

당사: 대표이사, 주식운용본부장, 전략운용본부 담당자 (사안에 따라 추가 가능)

#### 주요 의제

주주환원 현황, 자본배분 전략, 자사주 정책, 배당성향 목표, 이사회 구성 적정성 등

#### 후속 조치

면담 결과 회의록 작성 → 수탁자책임위원회 보고, 차기 단계 진행 여부 판단

#### 유의

면담 중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금지 (지침 제8조 제1항 제2호)



## 1단계 — 비공개·우호적 관여 (순차 이행 원칙, 계속) | 지침 제4조 제1항 제2~3호 (2025.8~)

3

### 서면 질의

지침 제4조 제1항 제2호

- 경영진 면담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 면담에서 다루지 못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구체적인 정보 공개 및 답변을 요청하는 단계
-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 의견도 청취 가능 (지침 제6조 제5항)

#### 주관

해당 종목 분석 담당자 (질의서 작성)  
→ 전략운용본부 담당자 (최종 검토 및 발송)

#### 내용

배당정책 구체 기준, 자사주 보유·활용 계획, 차기년도 자본배분 방향, 이사회 결의 사항 등 주주서한에 필요한 정보 사전 확보

#### 답변 기한

발송일로부터 통상 2~3주 이내 회신 요청. 미응답 시 주주서한 내 문제제기 사항으로 반영

#### 유의

질의 과정 취득 비공개 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불가 (지침 제8조 제2항)

4

### 비공개 주주서한 전달

지침 제4조 제1항 제3호

- 중점관여기업에 구체적인 개선 요구사항을 담은 주주서한을 공식 전달
-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기업 반응에 따라 공개 서한 전환은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결정 (지침 제5조 제3항 제2호)

#### 주관

해당 종목 분석 담당자 (서한 초안 작성)  
→ 전략운용본부 담당자 (최종 검토 및 발송)

#### 서한 내용

① 현황 진단 및 문제 인식 / ② 구체적 개선 목표 수치 제시 / ③ 이행 시한 / ④ 미이행 시 추가 조치 가능성 예고

#### 비공개 원칙

기업과의 신뢰 기반 대화 우선. 무응답·거절 시, 공개 서한 전환 여부는 수탁자책임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

#### 공시

비공개 서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외부 공시 대상에서 제외  
공개 전환 시 수탁자책임활동보고서에 기재 (지침 제7조)



## 1단계 — 비공개·우호적 관여 (마지막 단계) | 지침 제4조 제1항 제5호 (2025.8~)

### 5 의결권 행사(관여 의제 연계) 지침 제4조 제1항 제5호

-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관여 의제와 연계된 안건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
- 행사 방법 및 절차는 당사 「의결권행사에 관한 지침」에 따름 (지침 제4조 제2항)

<b>주관</b>	해당 종목 분석 담당자 (의안분석보고서 작성) → 전략운용본부 (검토) → 쟁점 안건은 수탁자책임위원회 심의·의결
<b>쟁점 안건</b>	이사 선임, 이익잉여금 처분(배당), 자사주 취득·소각, 정관 변경(주주권 관련 사항) 등
<b>기록·공개</b>	의결권 행사 내역은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에 포함하여 홈페이지 공시 (지침 제7조)
<b>준법 유의</b>	쟁점 안건 반대 행사 전 준법감시부서 사전 검토 및 이해상충 여부 확인 (지침 제8조 제1항)

### 1단계 전체 흐름 요약



※ 순차 이행 원칙 | 단계 간 전환은 수탁자책임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 (지침 제5조 제3항)



## 2단계 — 공개·적극적 관여 | 1단계 미해결 시 수탁자책임위원회 결의로 개시 (2025.8~) | 지침 제4조 제1항 제4~7호 (2025.8~)

### 6 공개 서한 발송

지침 제4조 제1항 제4호

- 비공개 대화에도 기업 개선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동일 요구사항을 시장·주주에게 공개
- 수탁자책임위원회 심의·의결로 공개 전환 여부 결정(지침 제5조 제3항 제2호)

#### 공개 기준

비공개 서한 발송 후 일정 기간 이내 무응답 또는 명시적 거절 시 수탁자책임위원회 결의로 전환

#### 효과

타 주주·시장 참여자 인지  
타 기관투자자의 동조 유발  
기업에 대한 실질적 압력 증대

### 7 타 투자자 연대·캠페인

지침 제4조 제1항 제6호

- 타 기관투자자와 공동 행동 구성 또는 공개 캠페인을 통해 기업 압력을 조직화
- 이해상충 가능성 여부를 준법감시부서와 사전 협의 필수(지침 제8조 제1항 제1호)

#### 방법

타 운용사·연기금과 공동 서한 발송  
의결권 자문사 협력  
투자자 포럼·공청회 활용

#### 준법 유의

공동행동 시 5% 룰(대량보유보고) 및 미공개정보 수수 금지 요건 준수  
→ 준법감시부서 사전 검토 필수 (지침 제8조 제3항)

### 8 위임장 경쟁

주주제안 방식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관여 단계

- 비공개·공개 대화로 기업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주주제안을 통해 의안을 상정하고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을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여 전체 주주 표결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종 실행 단계

#### 법적 요건

-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사: 6개월 보유 + 0.5% 이상
- 금융회사: 6개월 보유 + 0.1% 이상
- 기한: 주총일 6주 전

#### 사전 절차

수탁자책임위원회 의결  
→ 준법감시부서 법적 요건 검토  
→ 5% 룰 경영참여 목적 보고 필요 여부 확인



## 1) 점검 주기

### 정기 점검 (연 1회, 3~4월)

주식운용본부 담당자가 의결권 행사 검토와 연계하여, 전 보유 종목 지배구조·주주환원 현황 집중 점검

### 상반기 결산 연계 (7~8월)

실적 발표 및 중간배당 공시 시점 주주환원 정책 이행 여부 점검 중대한 미이행 확인 시 수탁자책임위원회에 보고

### 중점 관여 기업 연도별 점검

전략운용본부에서 연도별 진행 현황을 수탁자책임위원회에 보고

### 공시·IR 상시 모니터링

주요 공시(배당·자사주·합병 등), 이사회 결의 내용, IR 자료 즉시 검토

## 2) 점검 기준

### 주주환원 (핵심)

배당수익률·배당성향 업종 내 비교 적정성  
자사주 소각·환원 계획 존재 여부  
주주환원 정책의 구체성·지속성·예측가능성

### 지배구조 및 경영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사외이사 비율·감사위원회)  
회계 투명성(외부감사인 독립성·감사의견)  
관계사 거래·내부거래 공정성

### 자본효율성 및 재무건전성

현금흐름 대비 주주환원 비율  
자본배분 효율성(유동자산·차입금 포함)  
PBR/ROE 등 비율 개선

### 지속가능경영 및 기업가치제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여부 및 작성의 충실도 (지침 제3조 제4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의무 이행 충실성

## 3) 점검 후 조치

### ● 이상 없음 → 모니터링 지속

현행 수준의 정기·상시 모니터링 체계 유지  
주총 의결권 행사 시 찬성 기준 확인

### ● 개선 필요 → 중점 관여 후보 등재

종목 담당자 내부 검토 강화 및 차기 주총 의안 검토 시 주주가치 훼손 여부 집중 반영  
정성 기준 충족 시 수탁자책임위원회 상정 (지침 제6조 제1항)

### ● 중대 위반 → 수시 중점관여기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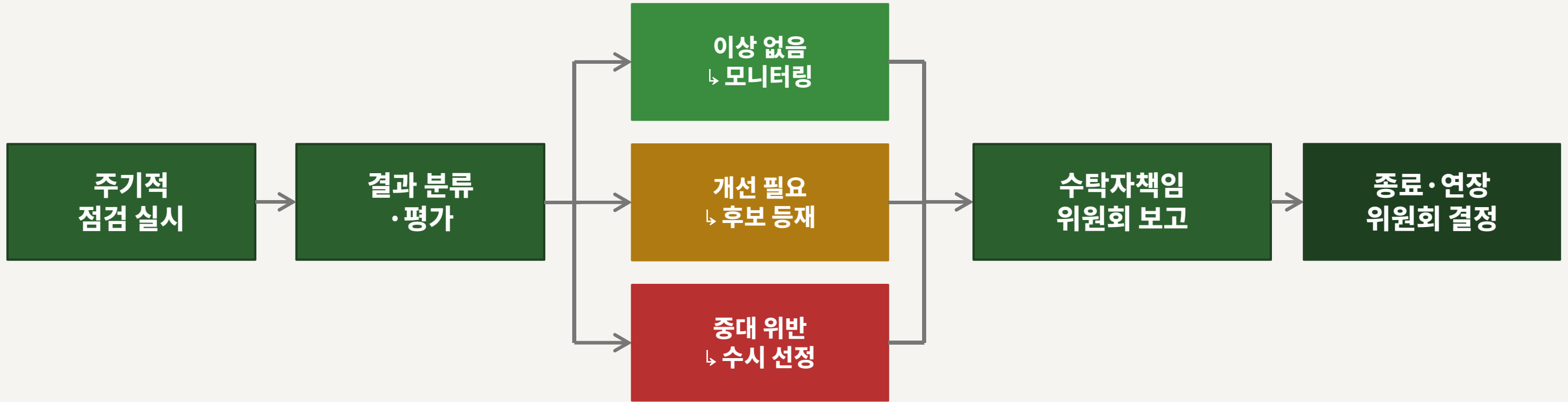
주주가치 훼손 사유 발생 시, 전략운용본부장이 수탁자책임위원회 긴급 소집  
쟁점 안건 반대 의결권 행사 및 사유 공시 (지침 제5조 제3항 제3호, 제7조)

### ▲ 이해상충 가능성 → 준법감시 사전 협의

준법감시부서와 사전 협의  
매매 제한 가능 (지침 제8조 제1항 제1호)



## 점검 결과 → 조치 흐름 (지침 제6조 제1~4항)



### 📌 점검·활동 결과 보고 및 공시

전략운용분부는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을 수탁자책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합니다.(지침 제6조 제3항)

중점관여기업 활동 내역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책임활동보고서에 기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지침 제7조)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지침 제8조 제2항)

점검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중요정보는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상 회사가 공정공시 등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한 이후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 주주 관여 활동 (Governance & Risk)

당사는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 확립과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주주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의 하락 요인을 선제적으로 방어하여,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 관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주주 관여 활동 종합표

구분	주요 내용	의결권 반대행사	사적 대화	경영진 대화	비공개 서신	주주 제안	합계
자본배분 원칙 및 재무 건전성	적정 현금 보유 수준 점검, 과도한 부채 관리, 자본 사용의 우선순위 설정 등	-	-	-	-	-	-
이해상충 방지 및 관계사 거래 투명성	일감 몰아주기 방지, 대주주 사익 편취, 계열사 간 거래의 공정성 점검 등	-	1	-	-	-	1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타당성	무분별한 문어발 확장 방지, 비핵심 자산 매각, 본업과의 시너지 검토 등	-	-	1	-	-	1
보수 체계의 성과 연계성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의 연동성, 클로백(Clawback) 제도, 스톡옵션 부여 적절성 등	10	-	-	-	-	10
환경·사회(E&S)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인권, 산업안전 리스크, 소비자 보호 이슈 관리 등	-	-	-	-	-	-
	합계	10	1	1	-	-	12

※주주제안은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2단계 관여(공개·적극적 관여)에 준하는 성격의 활동입니다.



## 주주 관여 활동 사례

A기업	이해상충 방지 및 관계사 거래 투명성 방식: 사적 대화	대주주가 보유한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통행세를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회사 관계자를 만나 합병을 제안
B기업	사업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타당성 방식: 경영진 대화	본업과 연관성이 적은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자본배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 필요하여 경영진 면담 진행



## 기업가치제고 관여 활동 (Efficiency & Value)

당사는 자본 효율성 개선과 적극적인 시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 간의 괴리(저평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가 상승과 주주 수익률(TSR) 극대화를 견인하는 능동적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가치제고 관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25년 기업가치제고 관여 활동 종합표

구분	세부 항목	주요 내용	의결권 반대행사	사적 대화	경영진 대화	비공개 서신	주주 제안	합계
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권고	미공시 기업 대상 공시 권고 등	-	-	-	-	-	-
	주기적 공시, 이행여부 점검	밸류업 가이드라인 준수, 공시 주기 설정,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	-	-	-	-	-	-
재무	PBR/ROE 등 비율 개선	ROE 개선 목표 설정, 영업이익률 제고, 비효율 자산 정리 등	2	-	-	-	-	2
	투자, 주주환원 확대 등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성향 확대, TSR 관리 등	-	-	1	-	-	1
비재무	기업지배구조 개선(체계 및 제도)	시차임기제, 황금낙하산, 집중투표제 등 주주가치 관련 정관·지침의 명문화 도입·삭제 여부	6	-	-	-	-	6
	일반주주 권익 제고	전자투표 도입, 영문 공시 확대, 정기적 CEO IR 및 시장 소통 등	3	-	-	-	-	3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 등 강화	이사회 성과 평가 체계 도입,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다양성 확보, 감사위원회 전담 지원 조직 설치 등	7	-	-	-	-	7
합계			18	-	1	-	-	19

※주주제안은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2단계 관여(공개·적극적 관여)에 준하는 성격의 활동입니다.



## 기업가치제고 관여 활동 사례

A기업

투자, 주주환원 확대 등  
방식: 경영진 대화

안정적인 실적과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유한 반면 시너지 가능한 사업 분야로의 신규 투자 집행은 요원한 상황으로 배당성향 상향을 요청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

<p><b>행사 대상</b></p>	<p><b>【의무】</b> 자본시장법상 의무 대상: <u>자산총액 5% 또는 100억원 이상 법인</u></p> <p><b>【자체】</b> <u>‘상기 의무 행사 대상 종목 조건’ 대비 협의의 조건을 적용하는 등 자발적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의안 분석 저변 확대 및 고객 가치 극대화 중심의 능동적 책임 투자 이행</u></p>
<p><b>행사 방법</b></p>	<p>전자투표 또는 위임장 전달</p>
<p><b>주요 판단 기준</b></p>	<p>이사의 선임·해임: 출석률, 전문성, 독립성</p> <p>임원 보수: 실적 대비 적정성, 전기 대비 변동</p> <p>정관 변경: 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 여부</p> <p>배당·자본정책: 주주가치 제고 기여도</p>
<p><b>지침 개정</b></p>	<p>2025.08.01 금감원·금투협 가이드라인 개정안 반영하여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 개정</p> <p>종목별 담당자의 안건 검토 과정에서 해석이 모호한 영역을 축소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p>

※ 의결권 불행사: 해당 없음



## 1 지배구조

●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운영	소집공고 기간 준수, 전자투표 허용, 의결권 대리행사 자격 완화, 안건 개별 상정
● 이사회 구성·운영 및 독립성	사외이사 비중 제고, 이사회 의장·CEO 분리, 집중투표제 유지, 이사 다양성 확보
● 감사·감사위원회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 구성, 비감사용역 보수 제한
● 임직원 보상체계	성과연동 보상, 이연지급(60% 이상·3년 이상), 과도한 퇴직보상·항금낙하산 반대
● 기업구조조정	재무·사회·환경적 위험 수반 M&A 반대, 단기 주가부양 목적 인적구조조정 반대
● 기업인수 및 인수방어	장기 주주가치 기준 판단, 경영권 방어 목적 자본금 증가·자사주 처분 반대 원칙

## 2 자본구조

● 자본금 증감·신주발행·자기주식	경영권 방어 목적 반대, 공개시장 자사주 매입 찬성, 취득·처분 주총 보고 요구
● 배당정책 및 주식연계채권	과소·과다 배당 반대, 이사회 결의 배당 시 배당정책 공시 전제, 배당기준일 변경 찬성
● 주식병합·분할	비례적 병합·분할 찬성, 상장폐지 방지 목적 병합 찬성, 주주 불이익 초래 시 반대
● 재무제표 승인	외부감사의견 '적정' 미달 시 반대, 감사독립성 훼손·비감사용역 과다 시 반대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희석률 10% 이상 또는 총발행주식 2% 초과 반대, 행사가 사후 조정·재발행 반대
● 차입·담보 제공 등 재무정책	제3자 자사주 대출 원칙 반대(우리사주 제외), 종류주식·사채 발행조건 공정성 검토

##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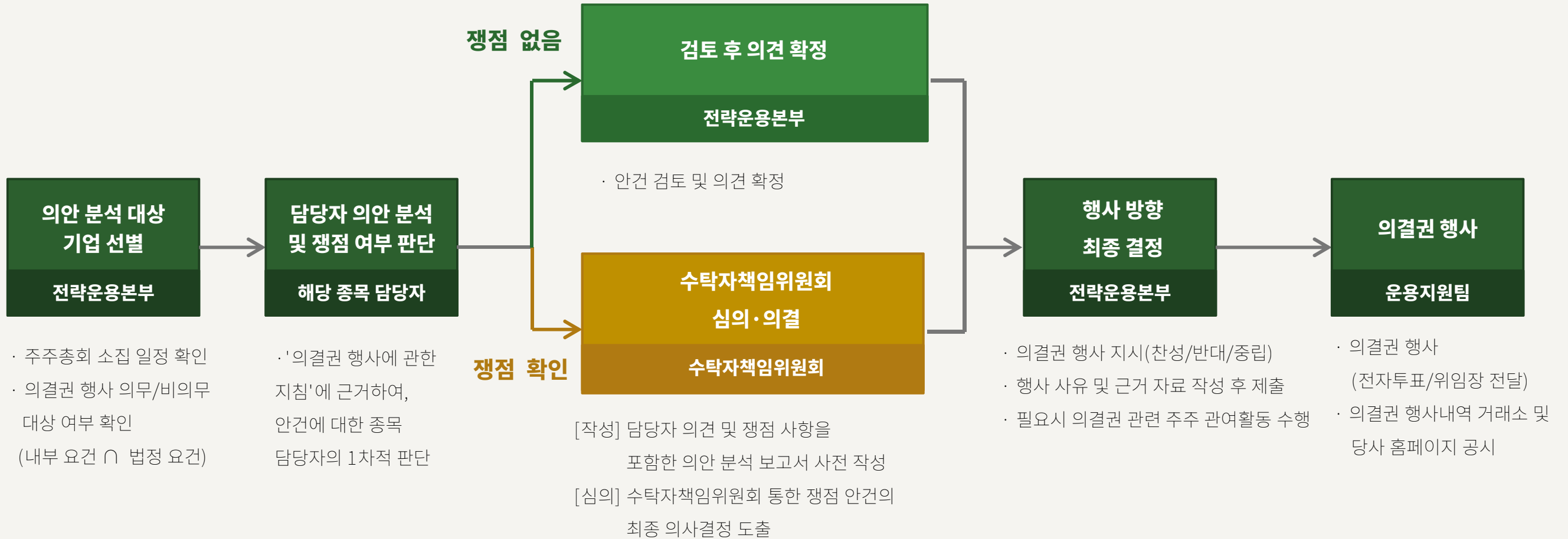
● 노동 및 이해관계자 보호	근로자 권익, 노동조건 개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안건 찬성 기조
● 정치·사회적 이슈 대응	정치자금 기부, 로비활동 관련 공시 강화 및 사회적 영향 부정적 요소 반대
● 소비자 보호 및 정보보호	소비자 안전·정보 보호 관련 공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촉구 찬성
●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목표·탄소리스크 공시(TCFD), CDP 대응 및 환경경영 강화 안건 찬성
● 국제 인권 기준	공급망 인권실사·반부패 기준 준수 촉구, ESG 지속가능성 강화 주주제안 찬성 원칙
● ESG 주주제안	주주가치·책임투자·사회적 영향 종합 고려, 부정적 측면이 크지 않은 경우 찬성

## 4 주주제안

● 판단 원칙	개별 사안의 취지·타당성·리스크·이해상충·회사 대응 수준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 이사회 안과 경합 시	장기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안건에 찬성 투표 (이사회 안 우선 아님)
● 법령 위반·제재 이력	중대 논란·소송 제기 여부, 벌금·제재 부과 사실 등 고려하여 부합 여부 판단
● ESG 지속가능성 강화 제안	주주가치·책임투자·사회적 영향 종합 고려, 부정적 측면이 크지 않은 경우 찬성
● 스톡옵션 주주사전승인 요구	일정 규모 이상 스톡옵션 부여 시 주주총회 사전 승인 요구 주주제안에 찬성
● 경영권 분쟁 시 자본행위 통제	신주발행·자사주 매각 시 주총 승인 요구 주주제안에 찬성, 방어 남용 방지



## 의결권 행사 프로세스



### 쟁점 안건 기준 주요 예시

이사 선임 (출석률 75% 미달, 주주가치 침해 이력 등), 이익잉여금 처분(배당), 자사주 취득·소각, 정관 변경(주주권 관련) 등 주주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안건

### 준법 유의(지침 제8조 제1항)

쟁점 안건 반대 행사 전 준법감시부서 사전 검토 및 이해상충 여부 확인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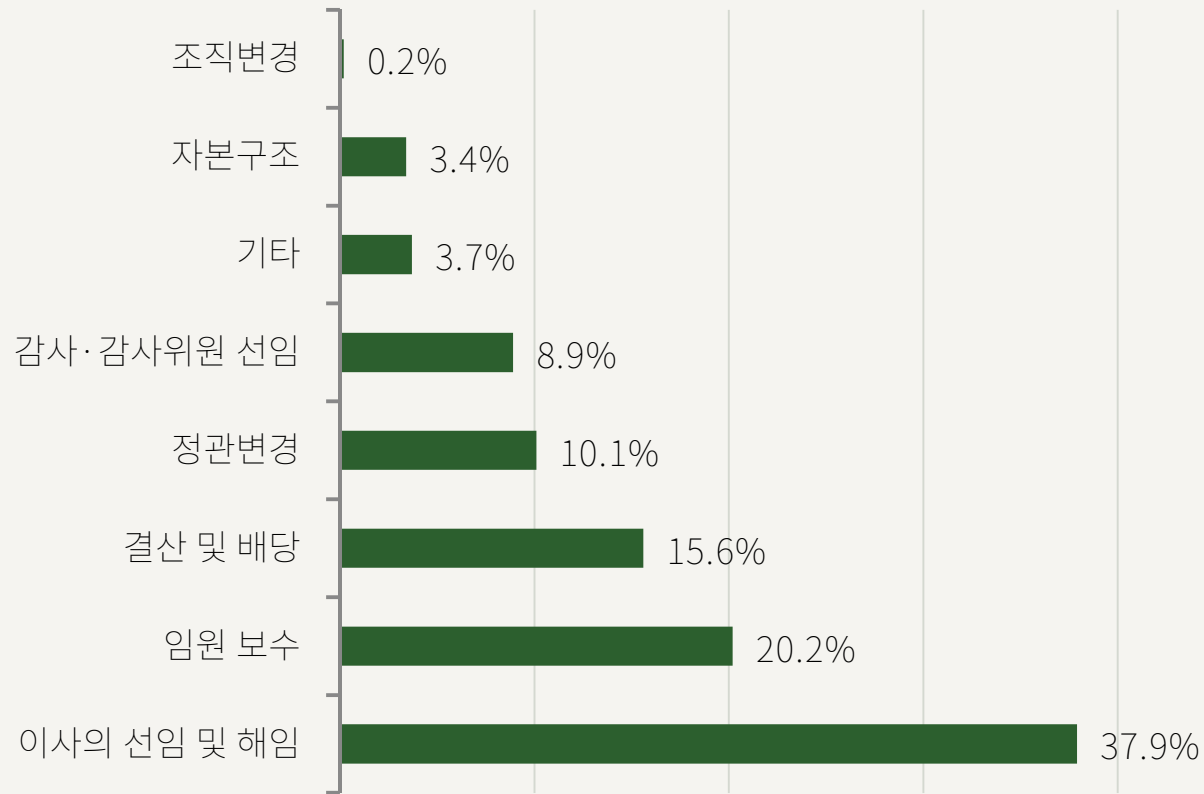
## 2025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138 행사 기업 수	86.2% 찬성 비율	13.8% 반대 비율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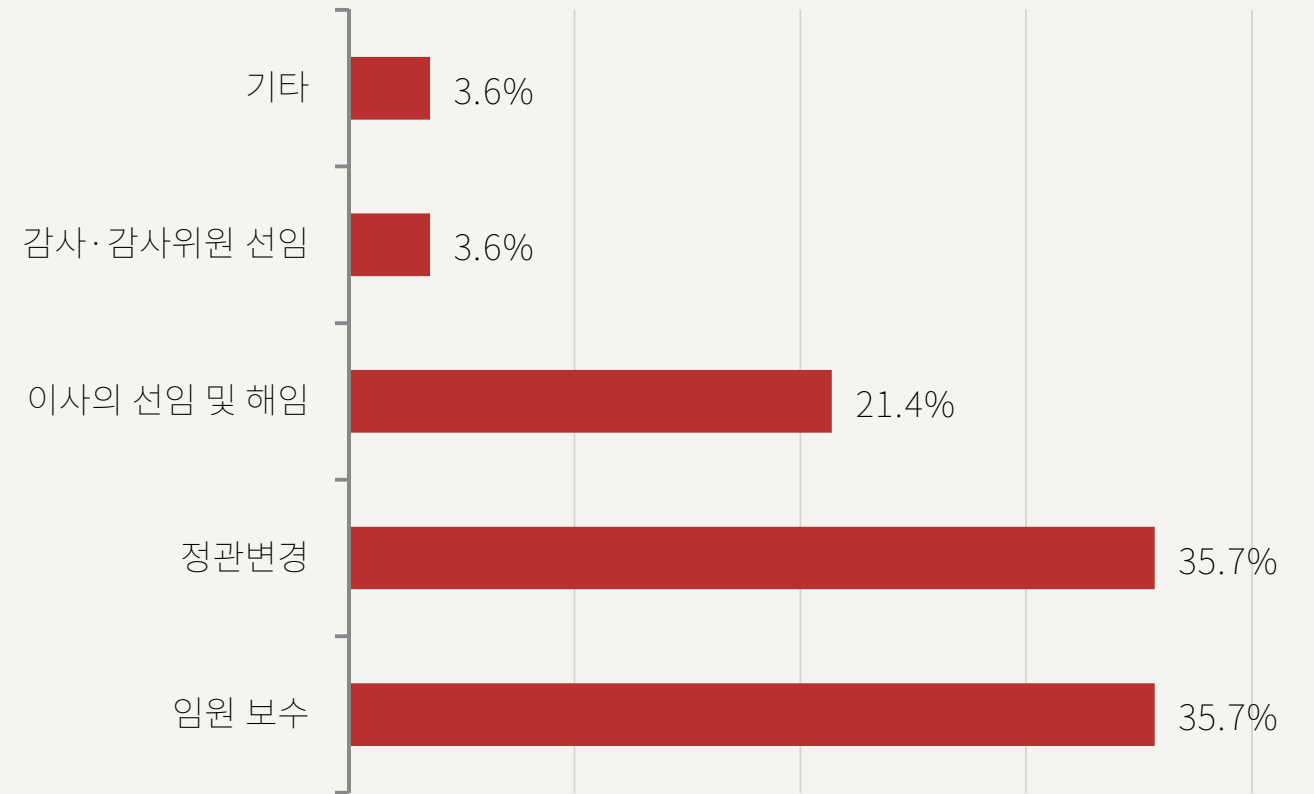
**【안건별】**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70건(37.9%), 임원 보수 197건(20.2%), 결산 및 배당 152건(15.6%), 정관변경 99건(10.1%), 감사·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87건(8.9%)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안건별 반대 행사】** 임원 보수·정관변경(각 35.7%), 이사 선임 및 해임(21.4%) 유형 순으로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 안건 별 행사 비율



### 안건별 반대 행사 비율 (유형별)



※ '25년 당사 의결권은 총 138개 기업, 총 976개의 안건에 대해 행사하였습니다.

※ 상기 반대 비율(13.8%)은 일부라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총 19개 기업의 비율입니다.





## 2025년 의결권 반대 행사 사례

기업	안건 유형	반대 사유
A기업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이사회 규모는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한도액은 오히려 증액. '25년 동사 이익 역시 큰 규모의 증익이 전망되지 않는 바, 이사 보수 한도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B기업	임원 보수	이사의 수가 전기 대비 감소하였음에도 보수총액 및 한도액은 전기 수준 유지. 보수 한도 대비 실제 지급액 여력이 2배 이상임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의 한도액 상향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C기업	정관 변경	삭제 예정 조항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명문화하여 주주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조항으로, 삭제 시 피투자사가 임의로 서면 행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주주 편익 및 절차 효율성을 해칠 우려 있어 반대
D기업	정관 변경	정관 변경 후 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 정책 변경'이라는 목적도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대
E기업	사내이사의 선임	① 재선임 사내이사로서 회장의 주주 권익 침해 소지 있는 의사 결정에 대해 감시·감독·견제 역할 미수행 ② 임기 중 출석률이 금투협 개정 가이드라인(75% 이상)을 크게 하회하며 합리적 사유 미제시
F기업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24년 이사회 출석률이 75%에 미달하였고, 그 사유가 총선 출마 활동으로 인한 불참이었기 때문에 충실한 의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반대
G기업	기타 (종류주식 전환)	종류주식 거래량 부족은 자사주 매입 소각 등으로 해소하는 것이 적절하고, 보통주 전환 시 지분 희석 문제가 발생하며 당사가 산정한 1:1의 전환비율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대



## 2025년 의결권 반대 행사 주요 사유

<b>정관 변경</b>	기존 대비 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반대하였습니다.
<b>임원 보수</b>	전기 대비 실적 개선 수준 및 향후 개선 가능성에 비해 보수 한도 상향이 과도하거나 추가 보수 항목을 신설하려는 경우 반대하였습니다.
<b>이사의 선임·해임</b>	출석률, 과거 주주 권익 침해 이력, 전문성 및 충실의무 이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사내이사는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외이사는 경영진 견제 기능 수행에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반대하였습니다.
<b>주주환원 관련</b>	재무현황과 미래 성장을 위한 자본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였습니다.

## 그 외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

당사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 수준에 맞추어, 지침 항목을 보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25년 8월 1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종목별 담당자의 안건 검토 과정에서 해석이 모호한 영역을 축소하고 종전보다 더 많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명확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도별 의결권 행사 내역(안건별 찬반 여부 및 그 사유)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발간 주기	공개 채널	보고서 형식
연 1회 이상 (지침 제7조 제3호)	당사 홈페이지 게재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 이행보고서 발간 이력

연도	보고서명	공개일	공개 채널
2026	2025년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최초 보고서)	2026.04	홈페이지

※ 금감원 내실화 방안에 따라 활동(이행)보고서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감사합니다

---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syfund.co.kr/policy/stewardship-code](http://www.syfund.co.kr/policy/stewardship-code)

---

**신영자산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6 신영빌딩 별관 6, 7층

TEL. 02-6711-7500 | FAX. 02-780-0540

